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성 북 구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70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일자리 정책 계획 수립, 고용 촉진 사업 시행 및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 등 성북구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규정 신설을 통해, 취업 기회 창출 및 구민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 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 라. 일자리 창출 사업·취업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6조~제7조)
- 마.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안 제9조~제11조)
- 바. 일자리위원회 회의 등 (안 제15조)
- 사.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 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위원회 신설 관련 조항에 대한 사전협의(검토) 결과: 적정
[자치행정과-14890(2024.7.17.)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
 - ① 기간: 2024.9.19. ~ 2024.10.10. (21일간)
 - ②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미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인권 영향 평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관련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 대상 사업에 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 사업 추가	미반영	[미반영 사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 등 고려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부패 영향 평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중략)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위치한 기업의 대표 2.~4. (현행과 같음) →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특혜를 유발하여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삭제	반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3. (좌동) →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4호를 제1호로 변경
부패 영향 평가	제15조(회의 등) ①~⑤ (현행과 같음) →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반영	제15조(회의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규정이 없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추가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중략)...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해당 개선의견 수용하여 조례안 반영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일부 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성별 영향 평가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6. (기존 5호) →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 포함 사항으로 명시	반영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좌동) ② (좌동) 1.~4. (좌동)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개선의견 수용하여 조례안 반영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신설> → 취업 취약계층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할 사항임 ※ 단, 현재 청년, 어르신,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일자리 종합·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음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신설> 7. 관내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신설> 8. 중장년 및 고령층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 사업<신설> → 관내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및 취업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례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할 사항임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촉진을 위해, 추진 및 지원 범위 확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중략)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3. (현행과 같음) 4.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단,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사회적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③ (현행과 같음) → 위원회 구성 시, 취업취약계층 분야별 전문가 1명씩 포함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례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할 사항임

5)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6)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자리 정책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정책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

3.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창업 활성화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지역 특화산업 지원 등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장 일자리위원회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및 일자리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소관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3. 성북구의회 의원 1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정책 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

제17조(일자리 지원시설) ① 구청장은 구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구인·구직 정보교류 등 구민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시설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일자리 지원시설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창업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지원 관련 행사 운영·지원, 홍보 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정책 및 창출과 관련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대상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
1. 우산 수리 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우산 수리 재활용사업 방문 주민	우산 수리	찾아가는 우산수리 재활용사업 운영 시
2.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6조(수당 등), 제17조(일자리 지원시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일자리정책과장 이 정 희